

의안 번호	제3261호
----------	--------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7월 3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7월 21일
- 라. 의 결 일 자 : 2023년 7월 21일

2. 제안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김포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재원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이행 차원에서 시의회 주문사항(제196회, 제198회 임시회)으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과 ‘해당 예산안’ 을 동일

회기 내에 제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나 본 조례안과 이에 근거한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 동시 제출됨.

- 비록 상위 법령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6월 28일 의결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회가 이번 회기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하나 시의회의 주문 사항에 어긋나는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담당 부서의 적극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지급신청) 제1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의 형태로 지원 신청서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여 단순 누락인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지급신청) 제2항에서 단서 조항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하 1~4호 중 제2호의 주민등록초본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모든 서류가 해당하는 것으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 법령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8조(지급신청)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이유를 파악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하여 경기도와 연계하는 등 현재 계획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 시 필요 첨부 서류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추가하여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없음

11.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261호
----------	--------

제출년월일 2023. 7.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상위 조례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8조에서 필수 자료로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조례안 제6조 제2항(지급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에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추가(안 제6조 제2항)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6조(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지급신청) ① (원안과 같 음)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 다.	② ----- ----- . -- ----- ----- ----- -----.
1. ~ 3. (생 략)	1. ~ 3. (원안과 같음)
<u><신 설></u>	4. <u>개인정보수집·이용·제 공·조회동의서</u>
4. (생 략)	5. (원안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원안과 같음)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 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김포시 예술인에 대하여 김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